**(주)인터비즈시스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 변경대비표**

■ 개정 내용

 - 퇴직연금 사업자 추가/제외 반영

[퇴직연금 규약 – 확정기여형(DC)]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구) 퇴직연금 규약 | 신) 퇴직연금 규약 | 비고 |
| **제6조(운용관리기관의 선정)** 사용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할 퇴직연금사업자(이하 “운용관리기관”이라 한다)를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. 명칭 : 신한은행명칭 : 교보생명 주식회사 | **제6조(운용관리기관의 선정)** 사용자는 법 제28조에 따른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할 퇴직연금사업자(이하 “운용관리기관”이라 한다)를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. 보험(2개) : KB손해보험, 교보생명은행(1개) : 신한은행증권(1개) : 삼성증권 | 사업자 추가(KB손해보험, 삼성증권) |
| **제7조(자산관리기관의 선정)** 사용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퇴직연금사업자(이하 “자산관리기관”이라 한다)를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. 명칭 : 신한은행명칭 : 교보생명 주식회사명칭 : 하나은행명칭 : 우리은행 | **제7조(자산관리기관의 선정)** 사용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할 퇴직연금사업자(이하 “자산관리기관”이라 한다)를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. 보험(2개) : KB손해보험, 교보생명은행(3개) : 신한은행, 하나은행, 우리은행증권(1개) : 삼성증권 | 사업자 추가(KB손해보험, 삼성증권) |
| [별지2] 이 제도의 사전지정운용방법(제24조 관련) | [별지2] 이 제도의 사전지정운용방법(제24조 관련) | KB손해보험, 삼성증권 디폴트옵션 상품 추가 |